

1. 개정이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 2027. 3. 1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평가대상 조직인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보건복지부의 정원 1명(4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12.23. 공포, 2026.12.24.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경위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관리 및 지원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필수공공의료실에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폐지에 따라 감축하며,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3급 또는 4급 정원의 상한을 고려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직급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을 각각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장애인학대대응팀과 비급여관리팀을 각각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금급여팀 및 청년정책팀

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의 명칭을 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로 변경하고, 소록도병원의 관리운영직군(9급 1명)의 직렬을 시설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6호까지”를 “제17호까지”로, “제18호 및 제19호”를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연금재정과”를 “기금운용제도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13.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안내·신청·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3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 인공지능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중앙부처 간 사회보장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14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모바일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제7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연금재정과장”을 “기금운용제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정책의 수립

제7조제16항제2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를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건강과 및 장애인학대대응팀을”으로,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8호 및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3항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16.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17.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제7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4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4항제8호를 제2호로, 제9호를 제3호로, 제11호를 제4호로,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벽없는 무인단말기(BF 키오스크) 제도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4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3.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제7조의2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한다.

9.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7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및 건강보건연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건강보건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3.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장애인학대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및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지원

4.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6.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 장애인거주시설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공공보건정책관”을 “의료자원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24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공공보건정책관”을 “의료자원정책관”으로, “제14호”를 “제25호”로 한다.

제11조제6항본문 중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를 “질병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질병정책과장”을 “질병정책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및 혈액장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7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3호를 삭제한다.

14.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삭제한다.

제11조제11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료광고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15. 환자 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27호 및 제28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4항(종전의 제17항)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항 제26호를 삭제한다.

17.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의 운영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평가

18.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3.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5.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7.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⑰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8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역필수공공의료실) 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공공의료정책관으로 하며,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공공의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 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 관련 총괄 및 조정
2.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의 총괄
3.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진료권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2.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료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의료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3.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혁신에 관한 사항
4. 지역 자율형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등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사항

⑧ 필수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3.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필수의료취약지 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5. 분만·소아·모자·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별 제도 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분만·소아·모자·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8. 필수의료 분야별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필수의료 전문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원 등 아동 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

⑨ 공공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6.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8. 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아동 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12.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국립대병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병원 교원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병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병원 평가 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진료 기능 육성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병원 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병원 중심 진료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체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운영
9.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
10.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응급의료체계 관련 통계 관리
12.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13.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지역별 이송 지침 관리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관리 및 평가
16.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 ⑫ 재난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응급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재난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 응급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병원 전(前)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조사·연구
11.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상전문치료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급성중독환자 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비급여관리팀을”으로,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비급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 비급여의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선별급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6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한다.

제14조제11항 각 호 외에 부분 중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을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확충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 중 “고위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이비인후과”를 “안이비인후과정의학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이비인후과장”을 “안이비인후과정의학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이비인후과장”을 “안이비인후과정의학과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

로 한다.

제22조 중 “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0항 중 “(6급 1명, 7급 1명)”을 “(6급 2명)”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하고,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으로 하며,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기금운용관리과) ① 기금운용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8조의5(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9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의료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사무운영서기보”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시설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중 “과학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을 삭제한다.

별표 5의3 중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6 중 “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 중 “보건의료정책실 재난의료정책과”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재난의료정책과”로 한다.

별표 10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자원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5.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6.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7.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수의료	7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총괄과	(4급 1명, 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의료정책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9. 지역필수공공의료실 필수의료정책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10.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국립대병원 정책과	4명 (4급 1명, 4·5급 1명, 6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별표 10의2의 제목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2항 및 제38조의4제3항 관련)”을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2항 및 제38조의5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0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10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운용관리과(존속기한: 2029년 7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6. 지역의료인력양성과(존속기한: 2029년 7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별표 11 제6호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8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2제10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2. 별표 2
3. 별표 2의2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5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장애인학대대응팀 및 비급여관리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장애인학대대응팀이 분장하는 사항 및 비급여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장애인학대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비급여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험급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을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공무원이 총괄한다.

1. 질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901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3
일반직 계	891
고위공무원단	2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2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보건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89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0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84
행정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
행정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사서주사	1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
약무주사	4
보건주사	17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운전주사	2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28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6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 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6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
보건주사보	8
행정서기	34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3
행정서기 · 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보	5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비디오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위	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904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3
일반직 계	894
고위공무원단	2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2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보건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89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0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 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93
행정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
행정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
사서주사	1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
약무주사	4
보건주사	17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운전주사	2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24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 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9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6
보건주사보	6
행정서기	30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3
행정서기 · 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
운전서기보	5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비디오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위	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3]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보건복지부령 제000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899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3
일반직 계	889
고위공무원단	2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1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보건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89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0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83
행정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
행정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사서주사	1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
약무주사	4
보건주사	17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운전주사	2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28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6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 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6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
보건주사보	8
행정서기	34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3
행정서기 · 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보	5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비디오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위	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보건복지부령 제000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902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3
일반직 계	892
고위공무원단	2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1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보건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89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0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 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92
행정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
행정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
사서주사	1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
약무주사	4
보건주사	17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운전주사	2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24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 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9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6
보건주사보	6
행정서기	30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3
행정서기 · 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
운전서기보	5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비디오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② (생 락)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u>제17호</u>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u>제18호</u> ----- -----.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제12호부터 <u>제16호까지</u> , <u>제18호</u> 및 <u>제19호</u>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u>제17호까지</u> --- <u>제19호부터 제21호까지</u> --- -----.
⑤ 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 <u>제20호부터 제31호까지</u>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u>제22호부터 제33호까지</u> --- ----- --.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국민연금정책과, <u>국민연금재정과</u> ,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⑥ ----- ----- ----- ----- ----- ----- <u>기금운용제도과</u> ----- -----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
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⑦ ~ ⑪ (생략)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중앙부처간 사회보장급여 정
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9. (생략)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현행과 같음)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13.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안내·신청·관리에 관한 사
항

14.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통합 플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7. (생략)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9. ~ 11. (생략) 12.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⑭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	<u>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⑬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1. (현행과 같음) 12. 인공지능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중앙부처 간 사회보장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⑭ -----
---	---

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⑮ (생략)

⑯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생략)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 마. (생략)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

1. ~ 8. (현행과 같음)

9. 모바일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⑮ (현행과 같음)

⑯ 기금운용제도과장-----.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정책의 수립

나. (현행과 같음)

<삭제>

라. ~ 마. (현행과 같음)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u>	5. <u>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⑰・⑱ (생략)	⑰・⑱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생략)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u>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u>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 ----- ----- <u>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건강과 및 장애인학대대응팀을</u> ----- --- <u>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7. 삭제	
8. <u>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u>	<삭제>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u>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u>	<삭제>

<u>13. 삭제</u> <u>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15. (생략)</u>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u>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삭제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삭제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7. 삭제 <u>8.·9. (생략)</u>	<u>13.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에 관한 사항</u> <u>14.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u>15.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u> <u>16.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u> <u>17.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u> <u>18. (현행 제15호와 같음)</u> ④ ----- -----. <u>1.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2.·3.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u>
--	--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생략)

12. 삭제

13. ~ 1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삭제

10. 삭제

11. ~ 15. (생략)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급에 관한 사항

17. (생략)

⑥ (생략)

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11호와 같음)

5. ~ 8. (현행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호와 같음)

9. 장벽없는 무인단말기(BF 키오스크) 제도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3.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⑤ -----
-----.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

11. ~ 15. (현행과 같음)

<삭제>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7. (생략)

8.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

9.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0. (현행과 같음)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및 건강보건연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건강보건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3.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장애인학대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법령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및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지원

4.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6.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 장애인거주시설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학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학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4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료
자원정책관 -----
-----의료
자원정책관-----

-----.

③ -----

----- 제24호-----

-----.

④ 의료자원정책관-----

----- 제25호-----

-----.

⑤ (생 략)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 18.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⑥ ----- 보건의료정책과-----

----- 질병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

----. ----- 질병정책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및 혈액장기정책과장-----

⑦ -----

1. ~ 13. (현행과 같음)

14.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9. <u>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0. 삭 제	
21. · 22. (생 략)	21. · 22. (현행과 같음)
23. <u>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u> <u>회의 운영</u>	<u><삭 제></u>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⑧ <u>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1. <u>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u>	
2. <u>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u>	
3. <u>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4. <u>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5. <u>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6. <u>의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7. <u>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u>	
8. <u>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u>	
9. <u>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u>	

회의 운영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
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4.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5.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

육 · 면허 신고 및 지도 · 감독

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⑫ (생략)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
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료광고 관련 제도의 운영
에 관한 사항

14.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
전의 설치 · 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15. 환자 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26. (생략)	1. ~ 26. (현행과 같음)
<u>27.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의 운영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지정·평가</u>	<u><삭 제></u>
<u>28.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관 련 법령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9. 삭제	
30. (생략)	30. (현행과 같음)
<u>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u>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 한 사항</u>	
<u>1의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u>1의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u>2.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 성</u>	
<u>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u>	
<u>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 가 및 혁신 지원</u>	
<u>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u>	

6. 신생아 중환자실 · 어린이병
원 · 노인보건의료센터 · 전문
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
능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에 관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
원

9. 삭제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
한 사항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
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17. ~ 25. 삭 제

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
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 · 개정

⑭ -----
-----.

1.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

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체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8.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운영

9.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

료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

10.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업

무에 관한 사항

11. 응급의료체계 관련 통계 관

리

12.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13.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조정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지역별 이송 지침 관리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

1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관

리 및 평가

16.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19.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

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신 설>

⑮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
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
립 및 조정

2.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
리

3.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
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
회의 운영

5.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
회의 운영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
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
에 관한 사항

⑬ 재난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응급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재난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 응급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병원 전(前)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조사·연구
11.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상전문치료체계의 구축·

<삭 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급성중독환자 치료의 지원

에 관한 사항

<신 설>

⑩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
영에 관한 사항

4. 의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
한 사항

6.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
정 및 운영

7.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
관에 대한 행정처분

⑪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신 설>

⑱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신설>

⑲·⑳ (생략)

<신설>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⑱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⑲·⑳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지역필수공공의료실)

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공공의료정책관으로 하며,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공공의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 관련 총괄 및 조정
2.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의 총괄
3.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진료권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2.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 촉
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료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의료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3.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혁
신에 관한 사항

4. 지역 자율형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
소 및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의 수립 및 운영

8.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

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등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사항

⑧ 필수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3.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필수의료취약지 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5. 분만·소아·모자·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별 제도 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분만·소아·모자·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별 진료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8. 필수의료 분야별 거점 의료
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필수의료 전문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11.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
원 등 아동 분야 공공전문진
료센터에 관한 사항

⑨ 공공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
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
성

4.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
가 및 혁신 지원

6.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

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8. 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
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
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
한 사항(아동 분야 공공전문
진료센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한다)

9.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
한 사항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
에 관한 총괄 및 조정

12.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국립대병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병
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
한다)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
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병원 교원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병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병원 평가 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진료 기능 육성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병원 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병원 중심 진료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개정
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
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체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8.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운영
9.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
료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
10.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업
무에 관한 사항
11. 응급의료체계 관련 통계 관
리
12.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13.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조정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지역별 이송 지침 관리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

1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관리 및 평가

16.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⑫ 재난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응급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재난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 응급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u>이송업 관리에 관한 사항</u> 9. <u>병원 전(前)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u> 10. <u>응급환자 이송 관련 조사·연구</u> 11. <u>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2. <u>외상전문치료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3. <u>급성중독환자 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u>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① (생략)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u>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u>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 ----- <u>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비급여관리팀을</u> --- ----- -- <u>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 ⑥ (생 략)

<신 설>

제13조(건강정책국) ① ~ ④ (생 략)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비급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 비급여의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선별급여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공 · 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건강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u>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u>	<삭 제>
11. <u>공중보건 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u>	<삭 제>
12. <u>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삭 제>
13. ~ 15. (생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u>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u>	<삭 제>
17.·18. (생략)	17.·18.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생략)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u>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u>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 ----- ----- ----- <u>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u> ----- ----- ----- -----.
⑤ ~ ⑩ (생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u>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u>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u> 장-----

<신 설>	-----.
<신 설>	1. <u>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중 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u>
<신 설>	2. <u>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신 설>	3. <u>의료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u>
<신 설>	4. <u>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 에 관한 사항</u>
<신 설>	5. <u>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확충에 관한 사항</u>
1. ~ 7. (생 략)	6. ~ 12. (현행 제1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원장 등) ①·② (생 략)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u>고위공 무원</u>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원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u> ----- ----- ----- ----- -----.
제20조(의료부) ① (생 략) ② 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 과·치과·<u>안이비인후과</u>·약제	제20조(의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안이비인후과정의학</u>

과 및 간호과를 둔다.	과-----.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 · 피부과장 · 치과과장 · <u>안이비인후과장</u> ·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 ----- <u>안이비인후과장</u> ----- ----- -----.
④ 내과과장 · 외과과장 · 치과과장 · <u>안이비인후과장</u> 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 · 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 · 시험 · 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u>안이비인후과장</u> ----- ----- -----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센터장 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2(센터장 등) ① ----- ----- ----- ----- <u>과학기술서기관</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22조(원장) ----- -----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제33조(사무국장) -----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생략)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조제·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생략)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 과학기술서기관 -----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6급 2명)---

-----.

⑪ (현행과 같음)

<삭 제>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
다.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
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8조의3 · 제38조의4 (생 략)

<신 설>

<신 설>

제39조(한시정원) ① ~ ⑥ (생
략)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제38조의2 · 제38조의3 (현행 제38
조의3 및 제38조의4와 같음)

제38조의4(기금운용관리과) ① 기
금운용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
와 같다.

제38조의5(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0의2와 같다.

제39조(한시정원) ① ~ ⑥ (현행
과 같음)

<삭 제>

<u>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u>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9</u>	<u>901</u>	+32
·	·	·	
·	·	·	
일반직 계	<u>860</u>	<u>891</u>	+31
고위공무원단	<u>24</u>	<u>27</u>	+3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u>20</u>	<u>23</u>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8</u>	<u>57</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 는 보건연구원	<u>1</u>	<u>3</u>	+2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보건사무관 · 약무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9</u>	<u>64</u>	+5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95</u>	<u>301</u>	+6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74</u>	<u>84</u>	+10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43</u>	<u>46</u>	+3
·	·	·	
·	·	·	
경찰공무원 계	<u>1</u>	<u>2</u>	+1
경위	<u>1</u>	<u>2</u>	+1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2</u>	<u>904</u>	+32
·	·	·	
·	·	·	
일반직 계	<u>861</u>	<u>894</u>	+33
고위공무원단	<u>24</u>	<u>27</u>	+3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u>20</u>	<u>23</u>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8</u>	<u>57</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 는 보건연구원	<u>1</u>	<u>3</u>	+2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 무관·보건사무관·약무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9</u>	<u>64</u>	+5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95</u>	<u>301</u>	+6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83</u>	<u>93</u>	+10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46</u>	<u>49</u>	+3
·	·	·	
·	·	·	
경찰공무원 계	<u>1</u>	<u>2</u>	+1
경위	<u>1</u>	<u>2</u>	+1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서기보			<u>2</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u>		<u><삭제></u>	△1	
	•			•	•		
	•			•	•		